

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DGA사와 투자양해각서(MOU)를 체결함에 따라 구미 국가4공단 22-1-3블럭내 74,580㎡중 37,290㎡(50%)를 구미시가 분담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취득재산 : 투자통상과 소관
〈외국인투자지역 부지 매입 - 무상임대〉
 - 토 지 : 1필지 37,290㎡(총면적 74,580㎡의 50%)
 - 예정가격 : 4,847,700천 원(총 부지금액 9,695,400천 원의 50%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지방재정법 제77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
-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,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5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

5. 검토의견

-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,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인 DGA사에게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하는 것이며,
-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구미국가 4공단 22-1-3 블록내의 공장용지 총면적 74,580㎡ 중 37,290㎡(50%)의 부지를 구미시가 분담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임.